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397호 2019. 7. 22.(월)

훈 령

○ 목포시 행정선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----- 2

고 시

○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11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훈령 제822호

「목포시 행정선 등 운영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9년 7월 22일

목 포 시 장

목포시 행정선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목포시 행정선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해양수산과장”을 “해양항만과장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수산과장”을 “수산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어업지도선은 어업질서 또는 수산업 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다.”를 “어업지도선은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업 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며, 행정선의 결항 시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의 운항 등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양항만과장 또는 수산진흥과장의 운항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항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정선 등의 정박지는 목포시 소재 남항 관공선 부두로 한다.
- ③ 행정선 등의 출발 및 도착부두는 남항 관공선 부두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행정선 등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운항함을 원칙으로 하고, 근무시간 외 운항시에는 사전에 결재를 받는다.
- ⑤ 행정선 등의 운항 신청은 사전(3일전) 접수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

경우에는 운항 후 사후 승인할 수 있다.

- ⑥ 행정선의 승선인원은 14명(선원 3, 승선원 11)을 원칙으로 하며, 소수인원(3명 이하)일 때는 상호 협의하여 5명 이상일 때 운항한다.

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일·숙직 근무등)”을 “(비상근무 및 소집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비상시에는 선장과 기관장은 선내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.
② 비상소집 발령시 선장은 전 선원을 소집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을 [별지]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을 [별지]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운 항 신 청 서

담당자	팀장	과장	결
			재

사 용 자	
운항기간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(일간) 20 년 월 일 시 분까지
운항구간	발 지 : 목포항 부두 경유지 : 착 지 : 목포항 부두
용 무	

위와 같이 전남 호 관공선 운항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소 속 : 직 위 : 성 명

(인)

목 포 시 장

운 항 명 령 서

제 호

사 용 자	
운항기간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(일간) 20 년 월 일 시 분까지
운항구간	발 지 : 목포항 부두 경유지 : 착 지 : 목포항 부두
용 무	
유의사항	① 사용자와 선장은 시간과 구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 ② 운항에 있어 선박의 안전보호에 위반된 운항을 할 수 없다. ③ 선장은 귀항 즉시 귀항사항을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전남 호 관공선 운항을 허가합니다.

20 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[별지 제2호서식]

20 년. 월. 일. 요일. 날씨(바람, 구름, 맑음, 비, 눈, 안개)							담당자	팀장	과장	결 재
운 항 시 간	20 년. 월. 일. 시. 분부터 20 년. 월. 일. 시. 분까지						출 장 지			
출 장 지	목포에서 경유지 까지						출장목적			
구 간	제 1	제 2	제 3	제 4	제 5	제 6	제 7	제 8	계	
구 분	구 간	구 간	구 간	구 간	구 간	구 간	구 간	구 간		
운항 기간	출 발									
	도 착									
거 리									일계	
									누계	
주 기 운 항 시 간									일계	
									누계	
발 전 기 운 항 시 간									일계	
									누계	
기 타 특 기 사 항										
전 회 까 지 의 운 항 시 간 누 계			금 회 운 항 시 간				연 중 운 항 시 간 누 계			

유 류 수 급 상 황							
품 명	총지급량	<u>항해시간</u>		<u>사 용 량</u>	금 회 사 용 량	잔 량	비 고
<u>운 활 유</u>							
<u>경 유</u> <u>일 계</u>		<u>주기</u>			<u>주 기 :</u> <u>발전기 :</u> <u>합 계 :</u>		
		<u>보기</u>					
<u>경 유</u> <u>월 계</u>		<u>주기</u>					
		<u>보기</u>					
<u>승 선 자</u> <u>명 단</u>							
선 장	인			기 관 장	인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 (운항 및 관리) ① 행정선의 관리지원은 회계과장이 하며 운항감독, 선장 및 선원의 지휘·감독, 행정선의 정비 및 운항 세부사항 등의 관리 업무는 <u>해양수산과장</u> 이 주관한다.	제2조 (운항 및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항만과장</u> ----- -.
② 어업지도선의 운항·정비·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<u>해양수산과장</u> 이 주관한다.	②----- ----- <u>수산진흥과장</u> -----.
제3조 (사용) ① (생략)	제3조 (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어업지도선은 어업질서 또는 수산업 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<u>사용</u> 한다.	②----- ----- <u>사용</u> 하며, 행정선의 결항 시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<u>사용</u> 할 수 있다.
제4조 (운항) ①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의 운항 등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<u>해양수산과장</u> 의 운항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항을 하여야 한다.	제4조 (운항) ① ----- ----- ----- <u>해양항만과장 또는 수산진흥과장</u> ----- -----.
<신설>	② <u>행정선 등의 정박지는 목포시 소재 남항 관공선 부두로 한다.</u>
<신설>	③ <u>행정선 등의 출발 및 도착부두는 남항 관공선 부두를 원칙으로 한다.</u>
<신설>	④ <u>행정선 등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</u>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 (대장정비) 선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선내에 상시 비치하고, 정리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4. 당직일지

제6조 (일·숙직 근무등) ①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의 근무자에 대한 일·숙직 명령과 일·숙직비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과장이 주관한다.

②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의 일·숙직 근무자는 다음 날 오전 휴식기간 중에 소속선박이 출항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의 각 선장·기관장·갑판장이 상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선박을 정상 운영 하여야 한다.

에 운항함을 원칙으로 하고, 근무시간 외 운항시에는 사전에 결재를 받는다.

⑤ 행정선 등의 운항 신청은 사전(3일전) 접수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운항 후 사후 승인할 수 있다.

⑥ 행정선의 승선인원은 14명(선원 3, 승선원 11)을 원칙으로 하며, 소수인원(3명 이하)일 때는 상호 협의하여 5명 이상일 때 운항한다

제5조 (대장정비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6조 (비상근무 및 소집) ① 비상시에
는 선장과 기관장은 선내에서 비상
근무를 실시한다.

② 비상소집 발령시 선장은 전 선원을 소집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(생 략)

[별지 제1호서식]

운 항 신 청 서	담당자	담당	해양수산과장	결 재
사 용 자				
운항기간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(일간) 20 년 월 일 시 분까지			
운항구간	발 지 : 목포항 부두 경유지 : 착 지 : 목포항 부두			
용 무				

위와 같이 전남 호 관공선 운항을 신청합니다.
20 년 월 일

소 속 : 직 위 : 성 명

목 포 시 장

운 항 명 령 서

제 호

사 용 자				
운항기간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(일간) 20 년 월 일 시 분까지			
운항구간	발 지 : 목포항 부두 경유지 : 착 지 : 목포항 부두			
용 무				
유의사항	① 사용자와 선장은 시간과 구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 ② 운항에 있어 선박의 안전보호에 위반된 운항을 할 수 없다. ③ 선장은 귀항 즉시 귀항사항을 해양수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		

위와 같이 전남 호 관공선 운항을 허가합니다.
20 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<삭 제>

[별지 제1호서식]

운 항 신 청 서	담당자	팀장	과장	결 재
사 용 자				
운항기간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(일간) 20 년 월 일 시 분까지			
운항구간	발 지 : 목포항 부두 경유지 : 착 지 : 목포항 부두			
용 무				

위와 같이 전남 호 관공선 운항을 신청합니다.
20 년 월 일

소 속 : 직 위 : 성 명

목 포 시 장

운 항 명 령 서

제 호

사 용 자				
운항기간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(일간) 20 년 월 일 시 분까지			
운항구간	발 지 : 목포항 부두 경유지 : 착 지 : 목포항 부두			
용 무				
유의사항	① 사용자와 선장은 시간과 구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 ② 운항에 있어 선박의 안전보호에 위반된 운항을 할 수 없다. ③ 선장은 귀항 즉시 귀항사항을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		

위와 같이 전남 호 관공선 운항을 허가합니다.
20 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[별지 제2호서식]

20 년. 월. 일. 요일. 날씨(바람, 구름, 맑음, 비, 눈, 안개)		담당자	담당	해양수산과장	결 재					
운행시간	20 년. 월. 일. 시. 분부터 20 년. 월. 일. 시. 분까지			출장지						
출장지	목포에서 경유지			출장목적						
구분	구간	제1	제2	제3	제4	제5	제6	제7	제8	계
운행기간	출발									
	도착									
거리										
운행시간										
기타 특기사항										
전회까지의 운행시간누계		금회운행시간				연중운행시간누계				

유류수급상황						
품명	총지급량	전일까지 한해시간	전일 유류누계	금회 사용량	잔량	비고
모비류						
경유						
석유						
계						
선장			기관장			

[별지 제2호서식]

20 년. 월. 일. 요일. 날씨(바람, 구름, 맑음, 비, 눈, 안개)		담당자	팀장	과장	결 재					
운행시간	20 년. 월. 일. 시. 분부터 20 년. 월. 일. 시. 분까지			출장지						
출장지	목포에서 경유지			출장목적						
구분	구간	제1	제2	제3	제4	제5	제6	제7	제8	계
운행기간	출발									
	도착									
거리										일계
주 운행시간										누계
발 전 기 운행시간										일계
										누계
기타 특기사항										
전회까지의 운행시간누계		금회운행시간				연중운행시간누계				

유류수급상황						
품명	총지급량	한해시간	사용량	금회 사용량	잔량	비고
윤활유						
경유 일계		주기		주기: 발전기: 합계:		
		보기				
경유 월계		주기				
		보기				
승선자 명단						
선장			기관장			

목포시 고시 제2019-145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9년 7월 22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 임	참 조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(조서)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
1	목포시 양을로 249	2019.07.22	건물멸실
2	목포시 옥암로 150	2019.07.22	건물멸실